코리아리서치센터 용역협력업체 업무협약서

㈜**코리아리서치센터**(이하"갑"이라 한다)와 엔터 (이하 "을"이라 한다)는"갑"이 지정한 용역업무와 관련한 일에대해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갑"과"을"의 개별용역계약에필요한 제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상호간 성실히 그 의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존중 및 신뢰)
"갑"과"을"은 상호 존중과 신의로써 본 협약의 이행은 물론이고 본 협약에 수반한 협력사항 발생시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 3 조(업무협약 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협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한다.

제 4 조 (업무협약 대상 및 개별계약)
1) "을"은 "갑"이 지정한 용역업무를 진행하고 결과물을 "갑" 이 지정한 일시에 "갑"에게 제출한다.
2) 본 협약대상이 되는 개별용역계약은, "갑" 의 개별 용역의뢰 내역, "을"의 견적제출 및 "갑"과 "을"의개별 용역비용, 일정합의 등 제반 개별계약에 관한 일체의 상호간 전달문서로 갈음한다.
3) 업무협약 대상은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문서작성, 프로그램 개발 등 모든 용역계약에 해당한다.

제 5 조(개별 용역결과물의 검수, 수정 및 보완)
1) "을"은 개별용역업무 결과물 납품 이전에 "갑"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갑"의 수정 또는 보완요구가있을 경우"을"은 이를 성실히수정 또는 보완하여,"갑"이 지정한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을"은 검수에 입회할 수 있고, "갑"의 검수합격에 의하여 납품의 책임이 완료한 것으로 한다.
3) "갑"의 요청에 의거 작업중인 목적물의 보완, 수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 6 조 (개별 용역업무 지체 상금)
"을"이 개별 용역업무이행 의무를 지체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1 일에 대하여 용역계약 대금의 1,000 분의 3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단, 개별용역계약이행지체가 "을" 의 귀책 사유로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7 조(협약의 해지)
1) "갑" 은 다음 각 항의 경우 본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① "을" 의 본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갑" 이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기타 협조요구에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③ "을"이 개별용역업무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2 일이 경과하기까지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④ "을"이 "갑" 의 사전 승인 없이 개별용역계약에 대한 권리,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⑤ 부득이한 사유로 쌍방이 본 협약을 상호합의하에 해지하기로 한 경우.
2) "을" 은 본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해지 시점에 이행 중인 개별용역계약으로 기수령한 금액을 "갑"에게반환하여야 한다.단, 1 항 5 호의 사유로 본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한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이행 중인 개별용역업무의 정산서 및 작업물을제출하여 "갑" 의 검사를 받아 기성부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제 8 조(변상의 책임)
"을"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을" 은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하는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9 조 (개인정보보호)
본 협약이행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 해지와 피해보상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제 10 조(정보보안 및 유출금지의무)
1) "을"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유출하지 않을의무를 지며 "을"의 직원 또는 대리인도 본 의무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2) "을"은 "갑"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본 협약관계가 어떠한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갑"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제 11 조(지적재산권)
본 협약에 의하여 제작된 제작물 및 각종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 12 조(관할법원)
본 협약이 포괄하는 개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분쟁, 의견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해결하기로 하며,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률적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관할은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협약당사자가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18. 6. 4.

(갑)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 길 12, 3 층
(역삼동, 허바허바빌딩)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이사 김 승 호 (인)

(을)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6길 19-12
(한남동)
엔터 김 윤 [illegible]